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543호
- 발 의 자 : 안광석 의원(찬성자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8월 6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장기간의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시설을 여가교육 시설로 지정하여 여가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가 활성화 사업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
- 나.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제4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음.

그러나 상위법에는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이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것임.

-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은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에는 아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아동 여가 관련 조례 현황 >

조례명	조문내용(조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4. ~ 5. (생략)</p>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u>여가를 즐기며</u>,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3. ~ 4. (생략)</p>

- 동 조례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와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시설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사업이나 시설은 없었으며, 조례의 주관부서가 문화정책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 내 사업 중 동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은 없음.

- 개정안은 아동의 여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의 여가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서울시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254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안광석 외 9		2021.08.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활성화 사업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안 제9조제5호) ○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5. 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시행 2021. 8. 19.]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2553, 2543 동일안건으로 안건병합 등 필요				
대응방안	○ 원안 가결으로 별도의 대응방안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팀장	홍우석(☎2133-2512)	담당	구민수(☎2133-2516)